

새터 反성폭력 내규제정을 위한 교 / 양 / 학 / 교

2000년 2월 1일(화), 오후 2시

1. 발제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바라보기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인권위 학내지원팀 김김보연

서울대 공대 새터내규제정과정과 제정 이후의 실질적인 적용사례

- 관악여성모임연대 임영섭

새터 反성폭력 내규 가안 설명

-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2. 중합토론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사건 바라보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위 학내지원팀 김김보연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들을 접하다보면 성폭력에 대한 조금씩 차이나는 관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들 중 가장 좁은 성폭력 개념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법규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강간이나 성기 삽입의 여부와 정도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관련 법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같이, 이러한 성폭력의 기준과 관점은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해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문제해결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폭력을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바라보고, 단순히 강간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PC통신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를 포함시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개념의 필요성을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지원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90년대 들어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시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학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이라는 실제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통념들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논리를 보이고 있으며, 혹은 사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라는 주장 속에서 실제적인 피해자의 경험을 간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해결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실제적인 경험과 상처, 고통 등은 간과되고 이를 객관이라는 이름 하에서 타인들의 시각에 따라 사건의 경중과 처리를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폭력의 부당함을 극복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제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를 그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건의 객관적인 처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 시각과 문제해결이라는 태도가 정말 객관적인지, 객관적 태도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우리는 성폭력이 아닌 다른 경우

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과 사건처리라는 태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 안고 있는 성에 대한 남성중심의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여타의 폭력이나 문제들에 대한 일반의 시각을 떠올렸을 때 분명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피해여성들에게 이러한 성폭력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을 우선하고 인정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실제적인 성폭력 사건의 지원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고통과 상처의 직접적 당사자이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이나 단위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우선 믿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해서도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거나 자기 비난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피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일차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것인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선택과 판단은 피해자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단위 내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해보며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단위를 통해 접수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 점차 많은 대학들에서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학칙이나 내규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종종 접하게 되는 논란 중의 하나가 앞서 말한 성폭력 개념과 처벌의 경중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성희롱이라고 비춰지는데 피해자가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1회 성추행인데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학우나 가해자 측의 반응은 대략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심하다. 가혹하다 식의 반응과 또 하나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인권 문제의 경우 저는 가해자의 인권도 물론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는 시각과 관련하여 저는 가해자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 타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행 법상의 처벌이 아니라 학칙이나 내규를 통한 처벌을 하고자 했을 경우 그것은 그러한 학칙이나 내규의 적용을 통해 그러한 행동이 타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문제임을 알려내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앞서 말한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와 상처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 인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당위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처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

규나 학칙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가능한 처벌 방법들이 제시되고 피해자가 이들 중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처벌방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단위의 사건 지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요구안을 가지고 가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일차적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 경험과 상처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리고 이를 계속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에는 양쪽 모두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당위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구안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낮춰야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과 협상의 과정을 단위가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지원도 아니고 단위가 마치 하나의 서비스 기관처럼 피해자의 모든 역할과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피해자에게 무력감을 줄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더욱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뢰에 있어서도 단위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단위가 할 수 있는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피해자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요구안을 가지고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조정과 협상의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데 실제적인 효과와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참여수위에 따라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나 학칙이나 내규를 통한 사건처리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학칙이나 내규의 처리과정 그리고 성폭력 개념정의의 부분을 문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이 학칙이나 내규가 현행법을 통한 성폭력 처리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적인 강제력이 강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학생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관점 속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학단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 발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새터내규제정과정을 제정 이후의 실질적인 사례

1. 새터내규가 있기까지

새터 성폭력 내규(이하 내규)를 제정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전의 새터가 얼마나 성폭력적이며 성차별적이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95년의 경우 열전새터에서는 '막걸리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빨대로 막걸리를 옮겨서 막걸리를 재구성한 후 남은 막걸리를 마셔야하는 게임이었다.(막걸린지 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학우가 마시면 점수를 두 배로 주었다는 점이다. 이 게임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게임들이 여학우가 참가하면 점수를 배로 주거나, 아니면 여학우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닭싸움 등이었다. 이런 게임으로 구성된 열전새터는 그야말로 성차별의 집합체였다. 또한 여학생들도 같이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다는 보기 드문 장점(?)을 이용하여 새터에서는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성폭력이 발생했다. 96년까지 공공연히 음란가요가 불리워졌고, 여학우와 술을 바꿔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들이 난무했다. 그 외에도 공대에 여학생들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의미라고, 마치 여학우를 반겨주는 호의인 양 진행되는 '지신밧기'는 여학우가 30% 이상 합격한 과에서도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새터의 성억압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음란가요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7년 새터에서 당시 공대 여성위원회(이하 여위, 현재 FinE)가 음란가요를 집중 공격했다. 음란가요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에 가사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성을 왜곡하고 있는 성폭력적 가사인지를 자바로 알려냈다. 이로 인해 97년도에는 공공연히 음란가요를 부르는 횟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음해인 98년 새터 준비 당시 공대 운영위원회에서 한 운위원이 새터에서 <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위(현 FinE)에 내규 안을 작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에는 성폭력 학칙에 대한 학내에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96년도부터 공대에서 성폭력에 관한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별다른 이의 없이 내규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를 썩 내켜하지 않는 과학생회장들도 있었지만, '성폭력'라는 글자가 가지는 악명 때문인지 제정 추진과정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대강의 안을 '성폭력 학칙안'에 기초해서 작성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올렸더니, 역시나 큰 반발이 있었다. 내규 자체에 대해서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던 과학생회장들이 내규 조항 하나하나에 탄지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놀 수가 있겠냐는 등,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너무 애매하다는 등,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여학우에게 노래를 시켜놓고 '괴상'을 지르는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여학생이 나왔을 때 박수 좀더 크게 치는 것도 성폭력이나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과는 남학생한테도 괴성을 지른다는 등,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터 내규에 시비를 걸고자 하였다. 반면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더 현실적으로 명시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과학생회장들도 있었다. 탄지를 하나하나 소화하며 몇 번의 논의에 걸친 수정 작업 끝에 드디어, 98년 공대 새터 성폭력 내규가 만들어졌다.

2. 내규 제정의 영향력과 의의

98년, 99년에 걸친 내규의 힘 덕택에 많은 분위기 쇄신이 있었다. 음란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음란가요를 부르려 하자, 과장이 제지를 한 과도 있는 등 옛부터 내려오던 음란 가요의 계승 전통도 많이 사라졌다. (물론 음성적으로는 아직도 훌륭히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의의를 보자면, 우선 내규는 새터에서 새내기들이 전통적으로 물려받던 성차별적 문화의 흐름을 상당수 끊어낼 수 있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거의 처음 접하게 되는 새터에서, 선배들을 통해 물려받는 놀이 문화는 그들의 대학 생활에 큰 지침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새터가 보여주었던 성차별적, 성폭력적인 모습들은 여과 없이 새내기들에게 흡수되었으며, 이는 대학문화 전반을 성차별적, 성폭력적으로 만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내규의 존재는 이런 잘못된 첫단추를 끼우는 일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내규는 성폭력적 행위를 제지하려고 해도 학번외에는 제지할 근거가 없었던 새터의 문화에 탄지를 걸 수 있는 큰 구실을 제공하였다. 성폭력적,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오빠, 그거 성폭력이에요!” “아야, 그런 거 하면 내규 때문에 잡혀간대” 라는 식으로 웃음 반 불만 반의 자체 규제 움직임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내규는 성폭력의 개념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가해자들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들도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낼 수 있었다. 이는 반성폭력의 운동의 제일 기본이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개념을 강간(기껏해야 성추행)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성폭력인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가해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규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고,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내규는 단지 새터 중의 규약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내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고, 이는 학기 중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운동과 연결되어 성폭력 학생회칙을 뒷받침하는 큰 지지대가 되었다.

3. 적용, 해결 사례

98년

①재료공학부

98학번 한 학우가 음란 가요를 부르려다가 과장에게 제지당했다.

②기계C

98학번이 음담패설을 하려 하다가 제지당했다.

③지환시C

96학번이 반 학우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음란가요를 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 논의 테이블이 꾸러졌구요. 음란가요를 부른 96학번 학우가 과방에 사과자보를 붙이고 신입생환영회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당.

④조선해양

98학번이 새터 첫째 날 버스안에서 음란가요를 불렀다. 이 사실을 숨기려는 인물들의 활약이 있었으나 정보가 새서 뒤늦게나마 알려졌다.

-> 역시 논의 테이블이 꾸러졌구요. 음란가요를 부른 98학번이 내규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새내기였음을 감안하여 과학생회장이 사과자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과자보에는 '은폐'에 대한 사과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구요.

⑤산공과, 응용C

여학우만 올라가서 지신발기를 함.

-> 지신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여학생만 처벌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이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남학생이 올라갈 수도 있다면 지신발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9년

① 전기C

새터가는 버스 안에서 99학우가 쇼를 한디며 웃웃을 모두 벗어 제끼는 사건이 발생했음. 선배들이 그 후배를 가리면서 이를 제지했고, 버스 안에 있던 부학생회장이 그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했다.

-> 첫째날 밤 방별로 논의가 있었고, 둘째날 특위 테이블이 꾸러져 이야기한 결과 새내기인데다 공대 자료집을 받지 못해 새터 내규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대가 아닌 반내에서만 공론화하고 C반 학생회 사과자보를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에 자보를 붙일 경우 밤에 다른 과들이 보면서 다 보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보 작업은 취소되었구요. 대신 셋째날 아침에 전기C반이 다 모인 상황에서 과장이 구두로 발언을 했습니다.

② 지환시B

지환시B에 별명이 '야생마'인데 '야' 색마'로 불리우게 된 새내기가 있었다. 첫째날 밤 지환시C와 A를 돌았는데, 같이 간 친구들이 색마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구. 그 이전에 입학식 때에도 B반 학우들이 계속해서 색마라고 외쳤다고 함.

-> 공대 전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 결과 공론화를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환시C에 대해서는 B반이 와서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하고, A반에게는 38동에 사과자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③ 문화제 새내기 발언 사건

발언하러 나온 한 남학우가 한 여학우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 다행히 그 여학우가 그 자리에는 없었으나, 1400이나 되는 인원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무안해질 뻔했음. 다행히 발중에 단체로 와서 그 여학우를 찾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상대방 여성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남자의 프로포즈가 멋있고 근사한 것으로 조장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사건 총화자료로 이용했습니다.

④ 건축과 지신발기

문화제가 끝난 후 건축과에서 지신발기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특위에 물어왔으며, 건축 과정이 남녀 구분 없이 자원자만 올리고 여학우들도 깔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보면 자원자를 받았고, 아래 밟히는 여학우도 있었으나, 위로 올라간 남학우는 없었다고 하네요.

⑤ 새터가 끝나고

새터 가기 전 준비과정 등을 포함해서 새터 성폭력 사건을 총화해서 자보화했습니다. 어쩌서 이러한 것들이 성폭력이 되는가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글들도 역시 들어갔구요.

4. Q & A

(이하 내용은 98년 관악 인문대에서 있었던 김진희씨와 총학 성정치 위원회의 논쟁 글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Q : 자료집에 실린 내용이나 토론 내용들이 너무 노골적이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A : 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을 당한 피해자들이 재생산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부끄럽다고 숨기고만 있어서는 같은 일들의 반복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로 비디오는 좋은 것, 성폭력 사건은 민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조?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감추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밀하게는 성에 대한 것들을 뼈삭하게 알면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잘못된 이중 가치관을 깨뜨리는 데에는 최근 구성에 씨가 대단히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Q : 내규 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방지한다는 일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A :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규는 성폭력을 저지른 학우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발생과 해결 과정에서 왜 이 사건이 성폭력인지를 알리고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Q : 새터는 새내기들과 현내기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동지애를 맞출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 끈끈한 관계를 이뤄야할 새터에서 내규로 인해 남/녀가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A :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야할 새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 서먹한 관계는 없겠네요. 그것은 소수의 경우라고요? 다수의 끈끈한 관계유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자는 뜻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내규에 실린 내용은 그렇게 평장한 제약이 아닙니다. 음란가요를 부르고 성에 대한 농담을 해야 끈끈한 동지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Q : 새터때의 성폭력이 오히려 더 공개되어 모방범죄가 나오지 않을까요?

A : 자신의 선배, 동기, 후배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제대로 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 성폭력 모방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Q : 그렇게 일상 생활 하나하나가 다 성폭력이라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삼니까? 길가는 여자에게 테이트 신청하거나 밀려서 넘어지다가 우연히 가슴을 만져도 다 성폭력이게요?

A : 복잡한 버스나 전철 안에서 몸이 접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여자의 몸에 밀착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테이트 신청을 해서 거절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추근거리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술자리에서 마주앉은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은 당연한 예의지만 "여자가 따르는 술맛이 더 달다."는 식으로 여자동료를 술시중꾼 취급하는 행위는 당연히 성폭력입니다. 넘어지면서 우연히 가슴을 짚었다면 상대방 여성에게 사과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면 되겠죠. 넘어지면서 의도적으로 가슴을 짚으되 연기력을 동원하여 우연히 실수로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어찌겠냐고요?_- 그건 연기력에 달렸겠네요. 제가 어떤 답을 해주길 기대하셨나요?_-

Q : 성폭력 사실이 없었는데 여성이 사건을 날조 조작하여 어떤 사람을 가해자로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A : 성폭력 범죄는 다른 여타의 범죄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밀히 일어난다는 것과 증인이 거의 없다는 것. 강간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피해자이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미국에서는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작하여 주장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교수 사건에서, 우조교에게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던 2심 판사는 이 예를 인용하면서 '신교수에게 배상판결을 내릴 경우 일부 여성들이 돈을 노리고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신교수에게 배상판결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정을 너무나 무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죄인이 되고 정숙하지 못한 여자, 어디서 굴러먹은 여자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감히 누가 당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조작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조교가 대학 내에서 비밀비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폭력을 알람으로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신교수는 아직도 명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하^_^)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당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조작해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2, 제3의 성폭력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도 안심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몇 마디 첨부하겠습니다. 논의 테이블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양쪽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정리한 후 양쪽의 합의를 보아 결론을 내립니다.

Q : 가해자도 결국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는 없지 않나요?

A : 물론 아주 넓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전두환도 낙후된 정치구조의 피해자이고, 김영삼도 후진적인 경제 시스템의 피해자고 일본도 제국주의 만연의 피해자가 됩니다.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인 훌륭한 일이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할 일이지요.

Q : 그렇다고 실명 공개사과자보라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A : 가해자가 실명 공개사과자보를 썼다고 해서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성폭력범=강간범으로 치부해버리는 인식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란가요를 불러서 사과 자보를 썼다고 합시다.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합니까? 이럴 경우 대부분 그런 일에 실명사과자보는 심하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으로서 사과자보를 쓰는 것은 강간정도는 저질러야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만이 저지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발상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강간범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 내규는 강제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가 도망친다면 어떤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 : 일단 당연히 자치 규약은 강제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휴학하고 군대를 가버리면 군대를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단, 가해자가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도망칠 때, 혹은 재범 이상의 상습범일 경우는 의도적인 성폭행임이 확실시되므로 가해자를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경 조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충분히 동의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 학생회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짤막한 대자보만 붙이고, 실질적인 공개는 학교 밖에서 하는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가해자의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는 수도 있겠지요.

Q : 내규를 제정하는 자체만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A : 내규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인력상의 문제로 각과를 모두 관리할 수가 없었기에 98년에는 모니터링, 신고함 제도를 내규와 함께 시행했고, 99년에는 공대 성정치국의 특별 위원회원들이 모니터링을 담당했었습니다. 각과에서 한 명 이상의 모니터링 담당자를 내정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새터에 앞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공부했구요, 새터에 가서는 매일 밤 일정시간에 모여 그날 각과에서 있었던 일들을

총화하고 논의 테이블을 꾸려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효과는... 컸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 내규를 제정해도 학우들에게, 특히 대학문화에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A : 쉽게 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내규를 모른 상태에서 새터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터 이전부터 운위원, 과장, 과책임들에게 통보문을 보내어 내규에 대해 알린 후, 운위원 교양, 과책임 교양, 모니터링 담당자 교양을 시행하여 과의 책임자님들이 내규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도와야했습니다. 그리고 몇안되는 운동원들이 새터당시 새내기들을 모두 커버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과책임자들에게 새내기들에게도 내규를 충분히 알리고, 새내기들이 분위기에 끌려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편 새터 출발 직전 단대 학우 전체가 모여있는 장소를 통해 공개 교양을 할 수 있다면 전체 교양을 하는 것도 매우 좋겠죠. 지금까지는 시간이 적당치 않아 첫째날 밤 문화제 시작하기 전의 짬을 얻어 내규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새터 안에서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99년 공대 새터에서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를 실는 것은 당연, 아예 숙소 방마다 내규를 벽에 붙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내규를 미처 몰라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매년 잔재하고 있군요.

Q : 성폭력 사건을 숨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A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자신이 과에서 매장당할까봐 겁나서 신고를 못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는 대동단결의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증폭, 왜곡되는 새터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신의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학우를 압박하는 것은, 두번의 폭력을 가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같은 의미도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신고함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눈에 띄는 효과는 모르겠지만 '모니터링'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주는 영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신고함은 부담없이 접근 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에는 복도 끝에 설치했었습니다. 이번 00년 새터, 관악 공대에서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 그리고 내규에 따로 명시하여 온페시 온페에 대한 사과자보를 따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안)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O.T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한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들을 훑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96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짰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뿜으며 사정하는 것을 훑내내었다.

-99년 새터에서 모 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파,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

라'라고 외침.

② 새터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 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 예) 벽으로 몰아부쳐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 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함으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신고함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 1)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 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 3인-최대 6인).
- 2)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5)성폭력 사건 대책위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위원직을 박탈한다.
- 6)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 ③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 ④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10. 징계내용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 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안건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위 새터 내규는 00년 00월 0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토론 >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 대자보

실명사과자보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징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자,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징계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실명사과자보는 피해자의 요구로 가해자의 동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건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사과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함은 1차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가해자의 이름을 명기하여 공개하는 실명사과자보에 대해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해자의 실명이 널리 알려질 경우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구조적인 범죄이다. 달리 말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비일비재한 성폭력은 그 범죄가 발생한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에 내재한 많은 문제점들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형태를 띠고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사회성을 간과하게 될 때 성폭력은 단순히 '부도덕한 개인인 가해자와 거기에 채수없게 걸려든 피해자'의 문제로 환원되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성폭력의 사회성이라는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역시 사회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체현자로서의 죄과가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듯 성폭력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성폭력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 차원의 처벌이상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실명사과자보는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과이며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 구조적 범죄이며 따라서 이는 잠재적으로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고 이는 실명사과자보라는 형식을 빌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가해자를 재교육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인 범죄임을 인식할 때 그 해결과 예방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명사과자보는 단순히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복성 처벌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성폭력에 대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문제제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징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자보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이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면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진 책임 -가해자를 다시 한 사람의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또한 실명사과자보는 사회 구성원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말하자면 실명사과자보라는 방법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비교적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가해자가 실명사과자보를 쓰기로 합의한 것 다시말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로 한 것은 자

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최소한의 표시이다.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이는 가해자의 사과가 진실하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한 연후에 사과자보를 썼다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실명사과자보라는 형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하에 채택되는 것으로, 가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판단으로는 성폭력 사건임이 명백하나 가해자가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가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해 버릴 수가 있다. 다른 학교의 예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해자가 순순히 시인을 하여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동의 없는 사건 공개'가 언제나 가해자의 시인으로 이어질 수는 없으며 자칫하면 원치 않는 상황(예를 들면 가해자가 성폭력 대책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이 발생하여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져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성폭력의 사회적·공동체적 차원의 해결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선불리 채택되어서는 안되겠다.